

거창군립공원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홍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17~28

발의연월일: 2017. 4. 3.

발 의 자: 이홍희·김향란·최광열·형남현·권재경

1. 제안이유

「자연공원법」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의 군립공원위원회 구성·운영 기준을 정비하고, 위촉위원에 군립공원 안에 거주하는 주민·사업자 등을 참여 하도록 하기 위해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군립공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준 정비함(안 제2조)

- (1) 위원회 구성인원을 10명에서 15명으로 조정함
- (2) 위촉위원을 군립공원에 거주하는 주민·사업자 등 포함
- (3) 특별위원을 공원구역 관할 읍·면장을 삭제하고, 공원구역안의 종교 단체 시설물의 관리운영책임자 추가 및 특별위원은 의결에 참여 하지 못하도록 규정함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자연공원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감사실, 산림과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17. 4 . 7 . ~ 4. 12.

(나) 예고결과: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6) 도내 조례현황: 거제시, 함안군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립공원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립공원위원회 설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자연공원법」 제20조”를 “「자연공원법」 제9조”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10인”을 “1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그 밖의 위원은 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를 “그 밖의 위원은 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군립공원 안에 거주하는 주민·사업자 등 이해관계인로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제1호는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3. 당해 공원구역 안에 있는 종교단체 시설물의 관리운영책임자

⑤ 특별위원은 당해 공원에 관한 안건을 심의할 경우에 한하여 위원이 되며, 이 경우 특별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임기) 제2조에 따른 위촉위원과 특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연공원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창군립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자연공원법」 제9조----- ----- ----- ----- -----.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u>10인</u> 이내의 위원과 특별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조(구성)----- ----- <u>15명</u>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기획감사실장, 행정과장, 농업축산과장, 산림과장, 건설과장, 도시건축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u>그 밖의 위원은 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u>	③ ----- ----- ----- <u>그 밖의 위원은 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군립공원 안에 거주하는 주민·사업자 등 이해관계인로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u>
④ 다음 각호의 자는 특별위원이 된다. 1. 당해 공원구역을 관할하는 읍장 또는 면장 2. 생략 3. <신설>	④ (현행과 같음) <삭제> 2. (현행과 같음) 3. 해당 공원구역 안에 있는 종교단체 시설물의 관리운영책임자

현행	개정안
⑤ 특별위원회는 당해 공원에 관한 안전을 심의할 경우에 한하여 위원이 된다. 제3조(임기) 제2조 제3항의 위촉위원 및 동조 제4항 제2호의 특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특별위원회는 해당 공원에 관한 안전을 심의할 경우에 한정하여 위원이 되며, 이 경우 특별위원회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3조(임기) 제2조에 따른 위촉위원과 특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관 련 법 령

□ 자연공원법

[시행 2016.12.27.] [법률 제14480호, 2016.12.27., 타법개정]

제9조(공원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제10조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국립공원위원회를 두고, 시·도에 도립공원위원회를 두며, 군에 군립공원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각 공원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공원위원회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도립공원위원회 및 군립공원위원회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으로 지정되는 것을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토지를 기증한 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包括承繼人)을 해당 공원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31.]

□ 자연공원법시행령

[시행 2016.6.23.] [대통령령 제27245호, 2016.6.21., 타법개정]

제8조(군립공원위원회의 구성·운영기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군립공원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군립공원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9.30., 2010.10.1.>

1. 군립공원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과 특별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목의 자중에서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군수"라 한다)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가.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나. 군립공원 안에 거주하는 주민·사업자 등 이해관계인

다. 자연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특별위원은 다음 각목의 자가 된다.

가. 삭제 <2003.4.4.>

나. 당해 공원구역면적의 1천분의 1 이상의 토지를 기증한 자로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

다. 당해 공원구역 안에 있는 종교단체 시설물의 관리운영책임자로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

4. 특별위원은 그 자연공원에 관한 안건을 심의할 경우에 한하여 위원이 된다. 이 경우 특별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5. 위원장·부위원장의 직무, 위원·특별위원의 임기, 간사, 군립공원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도립공원위원회에 준용한다.